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32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서왕진 · 김재원 · 김 윤
신장식 · 위성곤 · 황운하
정춘생 · 김선민 · 박은정
강경숙 · 김정호 · 최혁진
백선희 · 이해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경력·직무 및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이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보수·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의 준수율,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내용”을 “내용, 제10항에 따른 요구 및 이에 따른 제출의 방법과 절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에는 지역별 수준 및 제공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에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2제2항제2호 중 “보수”를 “보수 및 복리후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수준 등의 조사·공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5

항·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사회복지사 등 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 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하며, 경력</u> <u>· 직무 및 근속기간을 반영하</u> <u>는 임금체계를 마련하여야 한</u> <u>다.</u> ③ ----- ----- ----- -----<u>사회복지사 등의</u> <u>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이</u> <u>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u> <u>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u> <u>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u> <u>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u> <u>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u> <u>운영을 위탁하는 국가 및 지방</u>

1. ~ 3.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⑤ ~ ⑧ (생략)

<신설>

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기준-----

-----.

1. ~ 3.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보수·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 표준보수·복리후생 기준의 준수율,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 이 경우 보수·복리후생 수준 및 제공실태에는 지역별 수준 및 제공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에게 기준을 준수하지

⑨ 제4항에 따른 조사·공표의 방법과 <u>내용</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사회복지사 등의 <u>보수</u>에 관한 사항 3. (생략) ③·④ (생략)	<u>못한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⑪ ----- -----<u>내용</u>, 제10항에 따른 요구 및 이에 따른 제출의 방법과 절차----- -----. 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의 적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보수 및 복리후생</u>-----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